

부근

261

B.R 필요 불필요 2

자 체 통 계 기안처 강신성 건축과 전화 번호 구내 319 근거서류접수일자

건축지도제담임 건축과장장 도시계획국장 부시장 시장 전결

제 5 전 조결 유 정 에 의 함 호

판 계 서 명

안 월 일 1963. 5. 8. 시 행 년 월 일 1963. 5. 9. 보 존 년 한

류 호 2054.63 전체통계 검열 5.9 종 결 정 서 기 장

유 신 주 발 신

261

무허가 건물 철거 집행에 대한고시 (별시) 건의

시내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연세 대학교 학교 시설 부지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철거코져 누차의 계고 및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배부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 함으로 인하여 철거 집행에 절차적인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집행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이들에게 아래와 같이 법적인 고시를 하여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철거를 단행코져 하오니 재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별시) 안 (案) 제 호 (1963.5.9.)

수신 시내 서대문구 창천동 산 6 번지

세대주 이 원 종의 73 명 (아래 명단자)

귀하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은 공공 시설 예정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임으로 자진 철거토록 누차 종용 하였으나 이를

이행지 ~~일~~고 노한 당시(충주)가 박한 계고서 미 행정 대집행

영장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귀하 스스로가 철회하시길
고시(충주)하오니 ^{2일여내} ~~일~~자진하여 철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자진 철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 와 행정 대
집행법 제2조 및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충주)가 대집행
철회를 단행하겠아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끝

單名帶在錄去散

主帶在	者入莫	主帶在	者入莫
金 基 滿		羅 珣 成	書 初 爾
金 鶴 耳		金 老 湘	
書 大 妍		吳 女 禹	
張 菜 七		柳 性 榮	
安 昌 世	書 模 云	金 加 五 利	
尹 俊 鎬		申 榮 鎮	崔 利 員
金 昌 根		"	文 三 淳
書 載 疏		金 榮 書	
白 南 浩		趙 彩 眞	金 用 煥
金 昌 成		金 錫 淳	
金 赫 守		金 士 志	
金 成 欽	金 金 金	鄭 志 榮	申 志 極
姜 雙 龜	女 正 是		書 在 鳳
韓 日 毫		書 今 山	趙 南 相
劉 思 周			趙 仁 守
白 淳		金 鏡 風	

255

書權書	德罔變	全書	駿子來	趙魯金	仁寅斗	俊墟發	朴朴金	智庚鳳	緒南洙
書書書	政如晉	書書	吳初	金文洪	相仲淳	鎡模應	書全	七貴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聖與	武古	柱庚	煥漢玉	鄭棟書	應相星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武古	沈朴安	成榮判	福植園	文全	書聖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武古	趙趙書	京南載	書書	書全	書聖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武古	趙趙書	京南載	書書	書全	書聖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武古	趙趙書	京南載	書書	書全	書聖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武古	趙趙書	京南載	書書	書全	書聖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武古	趙趙書	京南載	書書	書全	書聖	竟南
書書書	政如晉	全書	武古	趙趙書	京南載	書書	書全	書聖	竟南

金	哲	考			
桂	熙	瓊			
金	景	淳			
白	聖	斗			
書	載	帝			
鄭	海	龍			
申	昌	成			
劉	鳳	夏			
洪	錫	山	池	成	震
朴	泳	夏			
姜	炳	祿	書	允	順
趙	昌	祿	羅	英	爰
金	容	席			
金	經	杓			
朴	寬	錫			
書	苾	讓	趙	玉	順
朴	敬	先	奎	榮	順

서울 특별 시

130

253

1PK

번 정 후

3 m 44 m

안

서도계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30 번지

이 의 두

1953. 4. 17자 출원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청로 2가 50
20의 3필지 내 건축신변경 지정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고시문과 같이 변
경 지정함.

1953. 5. .

서울특별시 장 운 태 일

(별지 고시문 및 신청서 첨부)

안

수 신 서대문구청장

발신

의명
본부국장

제 목 동명

서울 마포구 아현동 530번지 이의두 출원에 의하여 국구관리
충청로 2가 50-20의 3필지 내의 별지 고시문 및 도면과 같이 건축선을 변경
지정하였으니 본건 시행에 유무없도록 하시압.

유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3부. 끝.

서울특별시

443

187

260

안 4

수신 | 공보실장

발신 | 도시계획국장

제목 | 동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가 99-20 번지 의 3필지내에 건
축신지정을 발지 고시문사본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 되었으니 시보에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 고시문 사본 1부. 끝.

별명 받침

건축법 제 30조 (건축선의 지정)

① 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서, 도로의 쪽의 경계선으로 한다.

단 시장 관수는 시가지구역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그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 관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리례없이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